

[개정 정관]

定 款



社會福祉
法人

蔚山廣域市社會福祉協議會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의 조성 및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울산광역시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회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② 이회의 영문표기는 Ulsan Metropolitan Council on Social Welfare로 하고, 약칭은 U·M·C·S·W로 한다.

제3조(사무소 등의 소재지) ① 이회의 주된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1.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사회복지시설)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36

제4조(사업) 이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회원단체 상호간의 연락조정 및 협의
9.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10. 사회복지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1. 구·군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12. 공동모금사업의 지원
13. 시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1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위탁하는 업무
15. 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16.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지원과의 연계.협력
17. 삭제
18. 이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의 추진
19. 이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이 회의 정관·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자연탈퇴 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상실
2. 사망
3. 해산 및 파산

② 제1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규정) 회원의 가입·탈퇴와 권리·의무의 이행방법, 회비 또는 부담금의 징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정지) ① 이 회의 회원이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회장은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장이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의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1.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그 밖에 정관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④ 제3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할 때 회장은 이사회 개최일자 10일 전에 자격정지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자격정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자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즉시 자격정지를 회복한다.

제10조(회원과 임원의 제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3. 9조 3항 2호의 사유로 자격정지를 받은후에도 이회의 정관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자
 4. 이 회의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자
- ② 제1항에 의거하여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 회장은 이사회 개최일자 10일 전에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명된 회원이 임원일 경우, 임원의 지위도 상실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① 이 회의 임원은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대표이사) : 1인
2. 부회장 : 4인~8인 [수석부회장 포함]
3. 이사 : 10인~21인 이하
4. 감사 : 2인

③ 회장 및 부회장으로 회장단을 구성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회장은 당연직으로 이사가 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균형되게 선임하여야 한다.

1.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장

2.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하는 자

③ 회장은 선임된 임원 중 수석부회장 1인을 포함한 부회장을 지명한다.

④ 부회장 및 이사의 궐위 시, 회장단에서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⑥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제반사무를 통리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선거에 입후보한 때에는 그 직무집행은 정지되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명예회장 및 고문 및 자문위원)

① 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과 고문·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자문위원은 회장이 추대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17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회장,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심의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서 심의된 본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등)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가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1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개최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총회 개최 관련 회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서면총회를 통해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의결권 · 선거권의 대리행사)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단체 회원인 경우 소속 임·직원 또는 다른 회원이어야 하며, 개인 회원인 경우 다른 회원이어야 한다.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단, 선거권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리인은 단체 회원인 경우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단체 또는 개인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위임시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회의록) 총회에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 10인 이상의 서명인이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본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본사업계획의 심의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
3. 본예산편성, 결산 심의 또는 추가경정 예산의 승인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
7.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요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등) ① 본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 년도 개시 2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개최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에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참석 임원 전원(의장포함)과 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회장단회의) ① 이회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② 회장단회의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장단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6조 내지 제27조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사회복지발전전문위원회

제32조(전문위원회 구성) ① 이회는 지역 사회복지분야별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발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명칭 및 목적은 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② 사회복지발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1 절 재 산

제33조(재산의 구분) 이회의 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의무의 부담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련되는 전세권 설정은 이를 완료한 후에 보고 할 수 있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편입조치하고 그 취득사유·취득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운영경비) 이회의 경비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정부보조금·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36조(회계의 구분등) ①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단, 결산잉여금이 지정후원금인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39조(예산 및 결산) 매 회계연도 개시 7일 전까지 다음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작성한다.

제 7 장 사 무 처

제40조(사무처) ①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을 지휘·통괄하고 사무차장은 이를 보조한다.

제41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직원) ① 사무처의 직원은 사회복지직·의료직·사무직·관리직·고용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의 임용·인사·복무·징계·신분보장·보수·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구·군사회복지협의회

제43조(구·군 사회복지협의회) ① 이회는 관할지역내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할행정구역별 구·군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군 사회복지협의회의 관할 구역·소재지 및 운영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구·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이 회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제 9 장 수 익 사 업

제44조(수익사업) 이 회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10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5조(정관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회의 목적과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11 장 공 고 방 법

제48조(공고의 방법) ① 이 회가 법령 및 정관과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12 장 보 칙

제49조(준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0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인계인수)이 정관 시행이전의 사회복지협의회설립 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회 행위로 간주하며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소유한 집기·사무기기 등 일체의 재산과 재산권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2003. 1.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